2025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및 유학생(대학) 모집 공고

충청남도와 (재)충남경제진흥원은 도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등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, 현장실습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「2025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」를 시행합니다.

이에, 충남지역대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> 2025.05.26. (재)충남경제진흥원장

▮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5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
- 사업목적 : 외국인 유학생 등,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현장실습 등 취업 기회 확대 및 산업현장에서
 양질의 인력 공급 및 도내 빈일자리 해소
- 접수기간 : 연말까지 상시 모집 ※ 예산 범위 내 소진시 까지
- o 참여대상 : 도내 기업, 대학, 외국인 유학생
 - (기 업)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
 - (대 학)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26개 대학

- (유학생) 현재 도내 대학 재학 중인 (전문)학사 유학생(D-2-1, D-2-2), 졸업생(D-10), '25년 이후 광역형 비자로 입국(전환)하는 유학생(D-2-C)*
 - * 신규입국(D-2-C) / 어학연수 전환(D-4-7 → D-2-C) / 석사 전환(D-2-3 → D-2-C)

○ 주요 내용

- (기업) 현장실습, 인턴십 등 직무훈련 및 실습생 관리 후, 취업 확정 *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일부 및 멘토수당 지원
- (대학) 유학생 대상 취업역량, 직무역량, 한국어교육 추진
 - * 정보처리 역량강화, 현장인력(용접, 전기, 지게차 등) 맞춤형 교육 추진
- (유학생) 직무훈련 매칭 기업에 출석, 부여된 직무 성실히 수행
- (충남도) 기본계획 수립, 사업 전반 관리·감독, 재정 및 행정 지원
- (센터)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금 지급,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

Ⅱ 세부 사업 내용

[1]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구성 (대학)

- (시간제 취업) 대학에서 기본·취업역량 포함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(8h, 온/오프라인), 시간제 취업 참여 유학생에게 공통 교육 실시
- (표준현장실습·인턴십) 유학생 별 현장실습 및 인턴 참여 업종이 상이하므로 직무역량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하여 대학별 가능 직무 역량을 포함한 자체 커리큘럼 마련(40h 이상, 온/오프라인 수업)
 - 타대학 학생이더라도 해당 대학 직무역량 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학간 교차 이수 가능하도록 지원 → 대학간 교육 공동체 구성
 - 실무실습이 필요한 현장인력 양성 교육의 경우 충남인력개발원 활용

< 교육・훈련 프로그램 구성(안) >

구 분	교육과정	세부내용	비고
기본역량	한국어교육	· 한국어 TOPIC 4급 과정	
(공통 필수)	직장예절 및 한국문화의 이해	· 기업 내 직장 예절 및 기업문화 · 한국 체류를 위한 문화의 이해	
	역량평가	· 한국어 역량 평가 · 취업 준비상태 및 현황 평가	
취업역량	취업역량 강화	· 이력서 및 포토폴리오 작성 · 자기소개서 및 모의 면접 훈련 · 체류 비자 관련 특강	
(공통 필수)	산업 및 직무 이해	· 유학생 취업 가능 직종, 직종별 직무 이해 등	
	취업 교육	·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 교육 · 현장 맞춤형 한국어 교육	
	전공 연계	· 기업 실무자 참여형 교육으로 E-7-1 비자 취득 목표	
	생산·제조 인력	· PLC 교육(기초 및 중급 과정)	
직무역량	사무 인력	· MOS 등 정보처리 역량 강화	
(선택)	기타 인력	· (예시) 호텔관광 산업 인력 등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편성 可	
	현장 인력	· 용접, 전기 과정 전문 기술교육 · 지게차(3톤 미만) 취득 및 실습	충남인력 개발원 활용

[2] 유학생 시간제 취업 지원

- (사업대상) 현재 도내 재학 중인 (전문)학사 유학생(D-2-1, D-2-2) 및 '25년 이후 광역형 비자로 입국(전환)하는 유학생 중 1, 2학년
- (지원내용) ^①유학생 :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유학생이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비 등 지원금 지급, ^②기업 : 시간제 취업에 참여한 유학생을 향후 우선 취업 알선

지원비	원비 지원 내용(유학생)		
	◆ 시간제 취업 허가(법무부)를 득한 유학생이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, 교통비 지원(100,000/월, 최대 6개월)		
최대 600,000원 (100,000원/월)	《 지급 요건 》 ① (사전교육 이수) 센터의 시간제 취업 사전직무교육 8시간을 이수한 유학생 ② (업종ㆍ기간) 제조업, 농ㆍ어업, 서비스업(편의점ㆍ식당 제외)에 1개월 이상 종사할 경우		

[3] 표준현장실습 & 인턴십 참여 지원

- (사업대상) 도내 대학 재학 중인 (전문)학사 유학생 및 '25년 이후 광역형 비자로 입국(전환)하는 유학생, 졸업생, 대학원생
- (사업방법) 표준현장실습 및 인터십 참여를 위한 기업 발굴-매칭, 기업·유학생·대학 참여 유도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

지원	유형	표준현장실습 (최대 6개월)	인턴십 (1개월)
	센터 지원	최저임금의 50%/월 멘토수당 100,000원/월	최저임금의 75%/월 멘토수당 100,000원/월
기업 (인건비)	기업 부담	최저임금의 50%/월	최저임금의 25%/월
	합계	최저임금의 100% +100,000원/월	최저임금의 100% +100,000원/월
유학생 (정주비)	센터 지원	200,000원/월	200,000원/월
대학 (교육비)	센터 지원	300,000원/1인당	300,000원/1인당

[4] 취업 연계 지원

- (**사업대상**)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유학생
- o (사업방법) 정주비 및 비자전환 비용 지원

전환 前 비자

D-2(유학)

- ▶ 외국인 유학생이 부여받는 비자로 1회 2년 상한
 - ① 아르바이트 가능(시간제취업허가 필요)
 - ② 학위관련 전문분야 인턴활동 가능
 - ③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능(시간제 취업허가 면제)



전환 後 비자

E-7-1(전문) / E-7-2(준전문) / E-7-3(일반기능)

- ▶ 국내대학(전문대) 졸업예정자가 전문지식·기술·기능직종에 취업할 경우 유학생비자에서 전환 가능
- ▶ 관리직종(67개)+준전문직종(9개)+기능직종(8개)

F-2-R(지역특화형)

▶ 인구감소지역 5년이상 취업할 경우 유학생비자에서 전환 가능

Ⅲ 모집 및 접수

① 기업: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- (모집기간) 연말까지 상시 모집(예산 범위 내 소진시 까지)
- (신청자격)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요건*을 충족 및 E-7, F-2-R 비자 발급이 가능한 도내 기업
 - *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첨부1 참조
 - ** E-7, F-2-R 비자 고용업체 자격 조건 첨부2 참조

< E-7-1 비자 취득 사례 >

- '24년도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아산소재 중소기업(제조업)에 취업
- 현장실습기간 6개월 중, 1개월을 남겨두고 채용의사가 있어 행정사를 통해 비자 취득(2주 소요), 현재 근무 중(성공사례 영상 제작 중)

○ (신청방법)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신청서(붙임1 참조)

─ < 신청 제외 대상>

- ① 4대 보험 체납 사업장
- ② "근로기준법" 제 43조의 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 하는 기업
- ③ "산업안전보건법"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
- ④ 기타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,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 - 소비, 향락업체,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
 - 계절적, 일시적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
- ⑤ 재무상태 등 현저히 열악하여 사업수행이 우려되는 기업 등

② 유학생 및 대학 : 충청남도 소재 대학 및 유학생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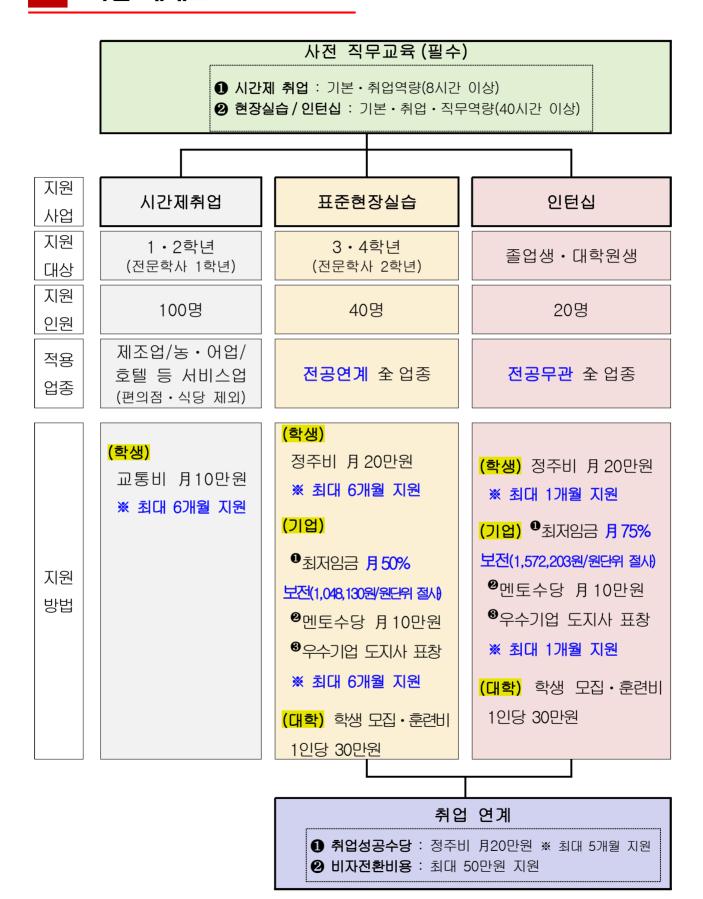
- (모집기간) 연말까지 상시 모집(예산 범위 내 소진시 까지)
- 신청방법
 - (유학생 등) 참여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소속 대학 관련 부서에 문의
 - 참여 대학
 - ① 시간제 취업: 광역형비자 시행에 따른 참여기업 모집 및 매칭
 - ② 현장실습: 참여기업 발굴 및 유학생-기업 매칭, 사전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협약서 등의 서류로 대체
 - ③ 인턴십 :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, 사전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인턴십 연계(참여신청서 등 학교별 서식 대체)
 - * 시간제, 현장실습, 인턴십 시작 시 확인서 제출 붙임2 참조

Ⅳ 유의 사항

- 사업 목표 달성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(선착순 마감)
-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 시,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시 선정 취소, 지원 중단, 추후 지원 제한, 반환 요청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(재)충남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∨ 문의처

○ (재)충남경제진흥원 외국인글로벌센터 (☎ 041-404-1477, cfgc@cepa.or.kr)



붙임1 2025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신청서(기업)

2025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신청서

1.회사현황

기 업 명		대표자명	
주 소		전화번호	
설 립 일		고용인원	
회사업종		생 산 품	
회사소개			
(간략히)			
구 인	성 명	직 책	
	연락처	휴대폰	
의뢰자	E-mail		

2. 구인내역

채용부서				멘토	
업무내용					
채용예정시	기			채용예정인원	명
		자	격 조	건	
성 별	연 령	기 타		근 무 시	간
0 2	신 6	71 -1		주중	토요일 근무여부
					□여 □부

3. 급여 및 복리후생

급 여		퇴직금	□유 □무		
복리후생					
현장실습 전, 필요한 역량 교육 기재					
※ 추가 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 1부					

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.

2025년 월 일 대표자 : (인)

불임2 2025년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확인서(대학)

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확인서

확인기관		000대학교	참여유형	시간제취업 ()		
				표-	준현장실습 ()	
				인기	턴쉽 ()	
		인적 시	항			
성 명			체류자격	1		
생년월일			국 적			
외국인등록번	টু		연락처			
		대 학	교			
학 교 명			소 재 지)		
		참여 기	l업			
기 업 명			사업자등록	컨호		
소 재 지			업 종			
근무기간			직무내용	<u>}</u>		
위 외국인	인은	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시	 업에 위와	같여	이 참여 중임을	확인
합니다.						
소 속		직위(직급)			성명	(서명)
		2025 .				
	(재)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			귀하		

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

[시행 2022. 1. 1.] [교육부고시 제2022-1호, 2022. 1. 1., 타법개정]

교육부(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), 044-203-6255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<u>「고등교육법」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22조</u>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, 「신</u>
<u>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산학협력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3</u> 및 <u>같은 법</u>
<u>시행령</u> <u>제13조의2</u> 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
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1. "현장실습 수업방법"(이하 "현장실습학기제"라 한다)이란 <u>법</u>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.
- 2. "표준 현장실습학기제"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<u>산학협력법</u> <u>제11조의3제1항</u>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'Co-op'(Cooperative education)으로 한다.
- 3. "자율 현장실습학기제"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 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.
- 4. "현장실습기관"(이하 "실습기관"이라 한다)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, 연구기관,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.
- 5. "현장실습생"(이하 "학생"이라 한다)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.
- 6. "현장실습지원비"(이하 "실습지원비"라 한다)란 <u>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</u>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- □ 제3조(적용제외)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,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.
- 1. <u>「선박직원법 시행규칙」</u>에 따른 승선실습, <u>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</u>에 따른 교육실습, <u>「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」</u>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, <u>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</u>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, <u>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</u>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
- 2. <u>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・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</u>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<u>「의료법」</u>, <u>「약사법」</u>, <u>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</u>, <u>「보건의료기본법」</u> 등에 따른 보건・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

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

- 제4조 생략
- 제5조 생략
- ☐ **제6조(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 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.
- 1.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- 2.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- 3.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- 4. 제4조제4항 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
- 5. 제18조제2항 ·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- 6. 제22조,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
- 7.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- 8.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,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
-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<u>법 제23조제1항제6호</u>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<u>법 제23조제2항</u> 및 <u>동법 시행령 제15조</u>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이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, 처리해서는 안 된다.
- 제7조 생략
- □ 제8조(실습기관)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.
- 1. 학교 주도형: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.
- 2. 실습기관 주도형: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 비 등의 여건·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,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- 1.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- 2. 학생의 보건 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
- 3.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·설비·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
- 4.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, 지도가 가능할 것
- 5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·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
- 6.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,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
-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- 1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
- 2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
- 3.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
- 이하 생략 -

첨부2 E-7, F-2-R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

1 E-7 비자

- ㅇ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* 적용
 - * E-7비자는 특정 활동비자로, 고급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지만, 동시에 국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심사 기준이 적용
 - 전문인력(E-7-1)은 임금요건 외 적용하지 않음, 준전문인력(E-7-2), 일반기능인력(E-7-3) 적용

ㅇ 임금기준

- 전문인력(E-7-1) : 2,876만원 이상
- 준전문인력(E-7-2) 및 일반기능인력(E-7-3) : 2,515만원 이상
- ㅇ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적용
 - 고용인원*의 20%로 이내이며, 고용인원 5명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한 *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E-7-1~3은 인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비자는 제외
 - 단, 주무부처(코트라, 한국무역협회)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고용자의 50% 범위 가능하며,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70%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,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
- 고용업체가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
-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/벤처기업은 5년간 매출이 없어도 허용 * 제조, 무역, 컨설팅, R&D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

2 F-2-R 비자

가, 고용기업 요건

o (고용가능인원)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

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*	최대 고용 가능인원(F-2-R)		
1명~5명 이하	3명		
6명 이상 50명 이하	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%		
51명 이상 100명 이하	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% 내 최대 35명		
101명 이상 150명 이하	40명		
151명 이상	50명		

- *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
- (허용인원 산정 기준)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,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
- 이 (세금체납 관련) 고용업체에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사실이 없을 것

나. 고용주 요건(법무부 조회사항)

- ㅇ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
 -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**금고 이상의 형 선고·**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
 -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,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「출입국관리법」제7조의2(허위초청), 제12조의3(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·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)*, 제18조제3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), 제18조제4항 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·권유), 제18조제5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·권유), 제18조제5항(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), 제21조제2항(근무처 변경·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), 제26조(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), 제33조의3제1호(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 등록증·여권 갈취)

- *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
- ③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및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또는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한 날 또는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하여 **금고 이상의 형**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**3년이 경과** 하지 아니한 자
-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「출입국관리법」제9조제2항(사증발급인정서 대리 신청)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
-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「출입국관리법」제19조(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) 또는 제19조의4(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)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